

5차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 한국위원회 논의사항

일시: 1999.5.29 오후 3시-7시

장소: 정대협 교육관

참석: 김명기, 지정일, 조시현, 정진성, 신혜수, 신영숙, 여순주, 정숙자, 윤정옥,
양현아, 심영희, 강창일, 하종문, 강정숙, 서준식, 김윤옥, 양미강

1. 도쿄 개최에 찬성한다. 다만 법정활동이 한국사회에도 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위원회는 한국에서 Pre-tribunal symposium을 열기로 하고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
2. 법정의 관할사항이나 절차에 관하여는 굳이 '규약'이라는 이름으로 조문화하기 보다는 활동의 기본원칙에 관한 합의와 법정의 취지를 담은 취지문 형태가 좋을 것이다.
3. 국가책임과 개인의 형사책임은 각기 다른 절차에서 다루기보다는 하나의 법정에서 같이 다룬다.
4. 국제검사단을 두되 이들은 법정의 준비작업과 긴밀히 결합하여야 하며 현지방문을 통해 피해자들과의 만남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법정 전 한국방문을 추진한다). 이들은 법정에서 기소장을 작성, 제출하도록 노력한다. 이들의 활동에 대한 적절한 인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5. 국제검사단은 형사책임부분에 있어서 중심이 되겠지만 피해자와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국가책임 부분에서는 소송의 주체(원고)가 되며 검사단과 별도로 관련자료 제출 등 나름의 소추활동을 펼 수 있도록 한다.
6. 배심제도와 변호인제도는 채택하지 않는다.
7. 궐석재판은 가능하도록 한다. 천황 개인을 어떤 형태로 법정에서 세우는가는 계속 논의하기로 하다.
8.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있다. 형벌과 배상에 관하여는 재판부에 ~~구체적인 양형, 배상액의 산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의견을 구하고 이에 따르기로 한다.~~ 그 동안 일본법정이 내린 배상액이 작은 것을 감안하여 재판부가 배상기준 등의 마련을 건설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하고 재판부는 기타의 구체 조치에 관하여서도 권고할 수 있다. 2년 15억
한 5억 5천만
9. 국제사회에 대한 협력요청: 맥두갈은 98년 최종보고서에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전시 성노예에 대한 수사진행에 역할을 담당할 것을 권고하였으므로 법정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고등판무관실의 지원과 결합의 가능성을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개진한다.